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29호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창원시 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하여 관련 시책 마련 등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에 생식건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으로 난임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난임극복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6,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mhwa@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8
----------	-----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의의원 : 이종화 · 김경희 · 김남수 · 김미나 · 김혜란
남재욱 · 문순규 · 박선애 · 박해정 · 백승규
서명일 · 성보빈 · 오은옥 · 이정희 · 이해련
전홍표 · 정순욱 · 최은하 · 한은정
홍용채 의원(20명)

찬성의원 : 손태화 의원(1명)

1. 제안이유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하여 관련 시책 마련 등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에 생식건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으로 난임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극복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난임극복 지원사업)”을“(난임극복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극복을”을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 <u>창업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난임극복을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 <u>난임 등</u> ----- <u>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u> ----- ----- -. 1. ~ 5. (현행과 같음)</p>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창원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지원사업
4.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경우
4.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③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